- 2025년도 글로벌 선도 우주기업 육성사업 -우주산업-전략산업 융합R&D개발 지원대상 모집 공고

대전 우주산업-전략산업 간 공동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우주분야(위성, 발사체, 지상국 등)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 촉진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. 지역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> 2025년 3월 6일 대전테크노파크 원장

		<u>_</u>					
사업목적:	대전의	우주산업과	전략산업	간의	기술개발	협력	활성
화를 통해	우주분이	ㅑ 기술경쟁력	강화 및	글로벌	시장진출	촉진	

- □ **지원기간**: 2025년 5월 ~ 2025년 11월(7개월)
 - * 추진상황에 따라 기간 다소 변경 가능
- □ 지원분야: 우주산업 분야 기술개발과제(위성, 발사체, 지상국 등)
- □ 지원유형 : 자유공모

1. 개요 및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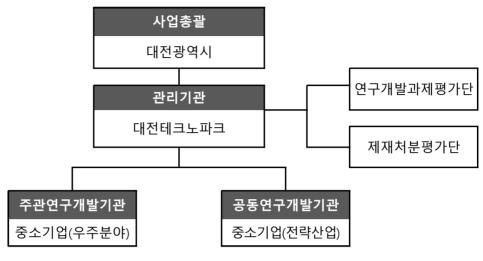
- □ 지원내용
 - 우주분야 기술·제품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(협약을 통해 지원)
 - * 지원내용 및 지원예산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□ 지원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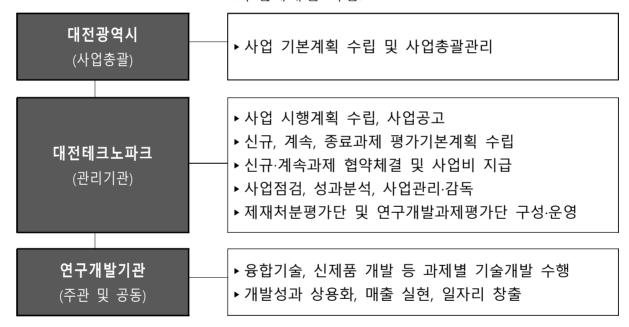
- 대전 소재 4대 전략산업* 분야 중소기업으로, 우주산업 분야와 그 외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(2개사 이상)
 - * (대전 4대 전략산업) 우주·항공, 바이오헬스, 나노·반도체, 국방
- □ 지원규모 : 2개 과제, 과제당 1억원 이내
 - 기업 부담비율 : 연구개발비의 10% 이상(현금 기준)
 - * 연구개발비 = 지원사업비 + 기관부담연구개발비(기업부담금)

2. 추진체계

□ 사업 총괄 추진체계



<추진체계별 역할>



□ 컨소시엄 추진체계: 대전 지역 중소기업 2개사 이상

- 주관연구개발기관(1개사) : 전체적인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을 제외 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(총괄)
- · 공동연구개발기관(1개사 이상) :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력을 통해 연 구개발과제 공동 수행
 - * 주관/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과제수행

3. 신청 자격요건

□ 주관연구개발기관

•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 소재지가 대전인 우주산업 분야 중소기업*

□ 공동연구개발기관

-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 소재지가 대전인 우주산업 분야 이외의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*
- * '중소기업'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 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
- * 「글로벌 선도 우주기업 육성사업 융합R&D개발지원사업 지침」"6. 신청자격 등 검 토"의 "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"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4. 지원제외 대상

지원목적에 따른 연구개발 형태의 적합성 여부, 연구개발기관의 자격
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
※ 연구개발내용에 본 사업 이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
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신청과제가 기개발·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
※ 단,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 목표, 연구수행방식,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
연구개발기관,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지역산업육성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인정되는 경우

-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,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※ 이때,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*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**를 근거로 판단
 - *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: 재무제표증명원(홈택스), 재무제표확인원 (회계법인,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)
 - **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: 재무제표증명원(홈택스)
 - 기업의 부도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. 휴·폐업 상태인 경우
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※ 단,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,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
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(체불사업자포함)로 등록된 경우
 - ※ 단,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,
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
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 하고 있는 경우 예외

< 관련문의처 >

- .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→ 신용회복위원회(www.ccrs.or.kr, ☎1600-5500)
- .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(보증) 및 재기지원 보증
 - →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(www.rechallenge.or.kr, ☎055-751-9636) 또는 국번없이 1357

-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 - ※ 단, ①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, ②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"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"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, ③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·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, ④ 연구개발비(지원사업비)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
 - 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, 상환전환우선주(RCPS)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
< 관련문의처 >

- ·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"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"에 따라 채 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
 - → 주채권은행에 문의
- ·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
 - →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(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)
 - → 공장, 기계장치, 시설 등 구입(신축) 증빙자료
-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 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※ 단, 접수마감일이 3월 31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면평가(또는 서면평가)시까지 가능
 - ※ 단, 간편 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 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 (해당년도 7월 말일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)까지 제출을 유예 가능
- 연구개발기관(주관, 공동), 대표자(공동대표, 각자대표 포함), 연구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'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'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
 - ※ 관련규정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2조의 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,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, 방법 및 절차)

5. 선정평가

□ 평가 기본방향

- 연구계획, 기술성, 사업성, 수행능력,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실시
- 지원과제 간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과제를 선정

□ 평가방법 : 서면 또는 발표평가(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용답)

- ※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
- ※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비대면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

□ 선정평가 관련 일정

사업공고	\Rightarrow	연구개발 계획서 접수	\Rightarrow	신청자격검토 및 선정평가위원회	\Rightarrow	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	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
′25.3.6.		~3.25.		~4.8.		~4.15.	4월말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□ 평가지표

평가항목	세부항목	비고				
기술성	ㅇ 기술개발 개요(20점)	·최종 산출물의 사업 목적과 부합성, 기술개발 차별성 등				
(40점)	ㅇ 사업목표 및 내용(20점)	·정량적/정성적 목표, 연차별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, 사업목적 부합성 등				
사업성	ㅇ 사업화 계획(15점)	·사업화 전략의 우수성, 사업화 타당성,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등				
(30점)	ㅇ 매출효과(15점)	·매출·수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,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등				
	ㅇ 추진체계 및 연구인력 구성	·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				
연구개발	(15점)	• 연구인력 구성 및 역할분담의 명확성, 수행역량 등				
수행능력 (30점)	o 사전준비 및 연구수행 인프라 (15점)	사전준비 및 계획수립의 우수성실적 및 핵심기술 보유 여부,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, 연구시설 등 인프라 보유여부 등				

[※] 세부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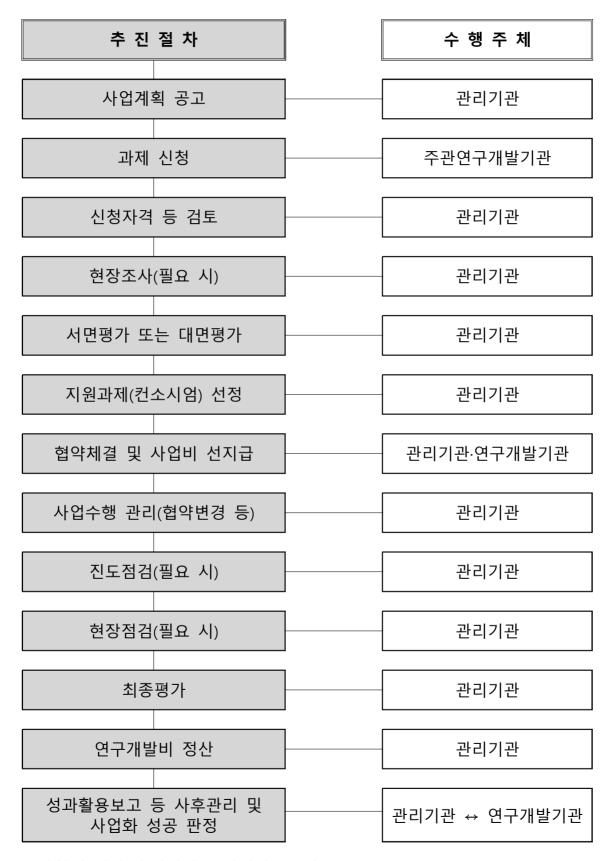
6. 유의사항

□ 본 사업은 대전광역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「글로벌 선도 우주 기업 육성사업 융합R&D개발지원사업 지침」을 따르는 것을 원칙하며.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을 준용함 □ 본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(연구 개발과제 수의 제한)에 규정된 연구개발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□ 단.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참여연구원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와 본 사업 참여비율을 포함하여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%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※ 인건비 계상률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전 참여율과 유사 용어 ※ 인건비 계상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(개인 계상률 한도 초과 등) 선정 취소 (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) □ 본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□ 협약전 또는 협약기간 중 소재지를 타시도로 변경할 경우 연구개발 기관의 자격은 상실되며.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(지워사업비 전액 환수) □ 본 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(주관·공동)은 **온라인 신청 시 신청** 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함 • 연구개발기관은 신청·접수 시 **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**를 통하여 대표자.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※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: www.ntis.go.kr □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.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(타부처 포함)

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

※ 유사과제 검색 방법: www.ntis.go.kr 로그인 → 과제참여 → 유사과제 → 유사성검토 ※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□ 주관연구개발기관은 1개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 □ 관리기관은 신청자격 등 검토에 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해 서면조사 또는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□ 본 사업은 협약을 통해 지원되며,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. 지원내용 및 지원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□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,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 (선정 취소 등) 가능 □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「글로벌 선도 우주 기업 육성사업 융합R&D개발지원사업 지침」을 따르는 것을 원칙하며.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제13조제4항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8조제1항에 따라「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| 을 준용 •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현금 및 현물 부담으로 구성하며. 연구개발비의 10%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• 인건비는 총 연구개발비(현물 제외)의 30% 범위에서 현금으로 계상 가능. 단. 해당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하여 편성할 수 있음 • 3천만원 이상의 장비 도입(구입)비용은 편성할 수 없음 ※ 시설·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사용되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□ 연구개발비는 별도의 사업비 관리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함 □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, 별도 공지 예정

7. 사업 추진절차



※ 상황에 따라 추진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

8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

· 공고기간 : 2025.3.6.(목) ~ 3.25.(화) (20일간)

· 접수기간: 2025.3.6.(목) ~ 3.25.(화) 18:00까지 / *자동마감

□ 접 수 처

· 온라인 접수처: 대전기업정보포털(DIPS, www.dips.or.kr)

※온라인 신청 마감일 당일은 접속자가 많아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신청방법

•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절차 및 방법에 의거 신청

신청절차	\rightarrow	1단계	\rightarrow	2단계	\rightarrow	3단계	\rightarrow	4단계
수행내용		회원가입		온라인 접수 (과제접수) 해당란 입력		문서작성 및 파일 업로드		접수확인 및 완료
작성 및 확인		연구책임자 및 기관조회 →미등록 기관 및 연구자 회원가입		기본정보, 공동연구 개발기관, 참여 연구자, 개발개요, 연구개발비 등		과제정보, 국내외연구동향 , 기술개발내용, 결과활용 등		제출하기, 접수증 출력
비고		-		-		연구개발계획서		접수증 출력

- ① 1단계 : 회원가입
 -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대전기업정보포털(DIPS)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
- ② 2단계 : 온라인 접수(과제접수) 해당란 입력
 - 과제 신청 시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대전기업정보 포털(DIPS)을 통해 직접 입력
 - ※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내용은 온라인에서 자동파일 생성
- ③ 3단계 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
 - '[양식1] 연구개발계획서'의 내용을 작성·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대전기업정보포털

(DIPS)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

-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제출(반드시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)
 - ※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제출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계획 및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업로드하여야 함
 - ※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・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
- ※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30MB임을 유의
- 사업신청 서류에 대해서 연차별로 차별화하여 제출할 수 있음
- ④ 4단계: 접수 확인 및 완료
 -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* 출력한 후, 신청·접수 완료 확인
 - * 접수확인용으로 보관 필수(향후 필요시 제출 필요)
 - ※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한 경우 "제출하기"를 클릭한 후 "제출완료" 확인 필요 (접수 마감일 기준으로, 수정 전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 후 새 접수증이 없을 경우 접수 취소)

□ 제출서류 (반드시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)

78	게ᄎ 니크	시	ul ¬	
구분	제출서류	구분	내용	비고
1	연구개발계획서	필수	1부	서식1
2	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필수	1부	서식 2
3	과제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·과세정보 이용·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	필수	1부 (연구개발기관별)	서식 3
4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필수	각 1부 (연구개발기관별)	서식 4
5	주관연구개발기관의 민간부담금 현금·현물납입확약서	필수	1부	서식 5
6	공동연구개발기관의 민간부담금 현금·현물납입확약서	필수	각 1부 (공동연구개발기관)	서식 6
7	최근년도 결산 확정 재무제표(표준재무제표증명)	필수	각 1부 (연구개발기관별)	-
8	최근년도 국세, 지방세 납세 증명서	필수	각 1부 (연구개발기관별)	-
9	사업자등록증	필수	각 1부 (연구개발기관별)	-
10	중소기업 확인서	필수	각 1부 (연구개발기관별)	_

- ※ 본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및 별첨 양식 날인하여 온라인 제출
- ※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없는 기업 또는 기관일 경우 회계 법인, 세무서 등에서 공인된 재무제표로 별도 제출
- ※ 7. 최근년도('23·24) 결산(확정) 재무제표를 제출하되, '24년 이후 설립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 '24년 결산(확정) 재무제표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
- ※ 8.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
- ※ 10.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, http://sminfo.mss.go.kr)에서 발급 가능

□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반드시 동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
- 계획서 양식 중 각 항목의 작성요령 또는 박스형 안내문(하단 참고)은작성을 위한 참고사항이므로 사업신청서 제출 시에는 삭제 요망

	작성 요령
ex)	0

•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

9. 관련 법령

□ 본 사업은 「글로벌 선도 우주기업 육성사업 융합R&D개발지원사업 지침」을 따르며, 공고문 또는 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

구분	관련 규정
 법	▶ 국가연구개발혁신법
시 행 령	▶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
시행규칙	▶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
	▶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
	▶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
고 시	▶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고 시	▶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
	▶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
	▶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

*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 할 경우에는 "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"을 우선 적용

10. 문의처

담당기	관(부서)	문의내용	연락처	
대전테크노파크	우주·ICT산업센터 강소희 책임	신청·접수, 추진일정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 기타 문의사항 등	(042-930-4331)	
. — "	운영지원실 지식정보팀 박유강책임	온라인 접수 오류	(042-930-4824)	